

5) 정비사업 시행계획

사업시행방법	사업시행 예정시기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·감 예상세대수
관리처분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	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증) 1세대

6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건립위치	부지면적(m <sup>2</sup> )	동수	연면적(m <sup>2</sup> )	세대수	세대규모
보문동가60-5 번지 일대	-	1개동	4819.50	63세대	전용면적 40m <sup>2</sup> 이하 : 63세대

7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사항

가) 변경 결정 취지

「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서 정한 밀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(용도지역 변경)을 수립

나) 변경내용

구분	면적 (m <sup>2</sup> )			비고
	기정	증·감	변경	
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7,850.00	감) 17,850.00	-	
2종일반주거지역(12층이하)	-	증) 17,850.00	17,850.00	
계	17,850.00	-	17,850.00	

2. 지형도면의 작성

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
3. 관련서류

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 02)3707-8237) 성북구 도시개발과(☎ 02)920-3661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384호  
서울특별시 보호 야생 동·식물 지정

‘야생 동·식물 보호법’ 제26조 및 ‘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등 5개 분야 총14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보호 야생 동·식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0월 25일  
서울특별시장

1. 서울특별시 보호 야생 동·식물 지정(총14종)

가. 식 물

연번	국명	학명
1	고란초	<i>Crypsinus hastatus</i> (Thunb.) Copel
2	통발	<i>Utricularia japonica</i> Makino
3	긴병꽃풀	<i>Glechoma hederacea</i> var. <i>longituba</i> Nakai

## 나. 조 류

연 번	국 명	학 명
1	큰오색딱다구리	<i>Dendrocopos leucotos</i>
2	쇠딱다구리	<i>Dendrocopos kizuki</i>
3	청딱다구리	<i>Picus canus</i>
4	개개비	<i>Acrocephalus orientalis</i>
5	청호반새	<i>Halcyon pileata</i>

## 다. 양서·파충류

연 번	국 명	학 명
1	꼬리치레도롱뇽	<i>Onychodactylus fischeri</i> (Boulenger)

## 라. 포 유 류

연 번	국 명	학 명
1	다람쥐	<i>Tamias sibiricus</i>

## 바. 곤 충 류

연 번	국 명	학 명
1	나비잠자리	<i>Rhythemis fuliginosa</i> Selys
2	산제비나비	<i>Papilio maackii</i> Menetries
3	물자라	<i>Muljarus japonicus</i> (Vuillefroy)
4	검정물망개	<i>Cybister (Meganectes) brevis</i> Aube

## 2. 지정사유

- 가. 서울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 동·식물중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
- 나.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종
- 다. 학술적, 경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종의 체계적인 보호 필요
3. 주요 생태적 특성 - 붙임
4. 보호 야생 동·식물에 대한 행위제한
  - 가. 포획·채취·방사·이식·보관·훼손

## 및 고사시키는 행위

- 나.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·덫·올무·그물·함정 및 그 밖에 야생 동·식물을 포획·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
- 다.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당시에 해당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 야생 동·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5.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

연번	부 과 대 상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1	보호 야생 동·식물의 포획·채취 등의 행위제한 위반	100만원	200만원
2	보호 야생 동·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20만원	30만원

6. 보호 야생 동·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사항

가. 관리기관

-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(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)

※ ‘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’ 제38조(권한의 위임)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

나. 기 타

- 서울특별시 보호 야생 동·식물 지정·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(<http://greencity.seoul.go.kr>), 서울시생태정보시스템(<http://ecoinfo.seoul.go.kr>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그 외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(☎ 02)6360-4623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서울시 보호 야생 동·식물 신규종 생태 특성**

식물류

연번	종명	생태 특성
1	고란초	▪ 약재로 남채가 심한 회귀식물로 서울지역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종으로 산지나 길가의 바위 또는 수피에 붙어 자라는 상록다년초
2	통발	▪ 습지에 생육하면서 서울지역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종으로 못이나 논에서 자라는 다년생의 식충식물
3	긴병꽃풀	▪ 다년생 초본식물이고 습지가 있고 햇빛이 비치는 산지에서 자생하는 종으로 서울지역에서 드물게 분포 하는 종

조류

연번	종명	생태특성
1	큰오색 딱다구리	▪ 서울시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으로, 산림의 자연성 정도에 의존하며 서식하는 조류로 흔하지 않고 활엽수림의 노거수 교목림에 많으며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
2	청딱다구리	▪ 서울시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으로, 산림의 자연성 정도에 의존하며 서식하는 조류로 관목에도 앉고, 지상에도 내려 와서 개미를 잡아먹거나 부리로 나무줄기를 쪼아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있는 곤충류를 먹음
3	쇠딱다구리	▪ 서울시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으로, 딱다구리류 중 크기가 가장 작음
4	개개비	▪ 봄과 가을의 이동 시기에는 내륙의 갈대나 물가의 초지에서 관찰되며 서식지가 거의 사라져 감에 따라 최근 서울에서 개체수 감소
5	청호반새	▪ 한국에서 드물게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서울에서는 하천변 이용의 심화로 서식처 훼손으로 감소하는 종

□ 양서·파충류

연번	종명	생태특성
1	꼬리치레도롱뇽	▪ 산지의 계곡이나 바위 사이, 나무뿌리 주변에 서식하고 얇은 바위틈이나 물 속 나무뿌리에 수직으로 부착시켜 산란하며 유생은 1~2년 수중생활을 하고 수온이 낮은 산간 계류에서 발견

□ 포유류

연번	종명	생태특성
1	다람쥐	▪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산이나 야산, 도심지내 공원에서 관찰되는 종으로 과거에 매우 흔히 관찰되는 동물이었으나 서식지 변형과 들고양이 및 들개 등의 포식동물의 증가로 인해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 종

□ 곤충류

연번	종명	생태특성
1	나비잠자리	▪ 하천과 습지 등의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서식지 감소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화려한 색과 특이한 날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심미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
2	산제비나비	▪ 날개길이 41~75mm인 대형 나비로 크기에는 대소의 변화가 많으며 날개는 검으나 녹색·청색 등 금속색의 비늘가루가 있어 아름다움
3	검정물방개 (수서딱정벌레)	▪ 하천과 습지 등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서식지 감소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
4	물자라 (수서노린재)	▪ 알을 지고 다니는 습성으로 인하여 관찰과 학습용으로 친숙하며 수초가 많은 연못이나 습지에 서식하나, 근래에 서식처 감소로 인하여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음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85호  
**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18호(2007.7.5)로 고시된 『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』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

제9조제2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동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07년 10월 25일  
 서울특별시장

1.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 
 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위치와 면적

명 칭	위 치	면 적(m)		
		기정	증·감	변경
방화재정비촉진지구	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	509,170.2	감256.1	508,914.1